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생물자원관의 사업에 배양체 등의 확보·배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
-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함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